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70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7년 8월 14일
- 회 부 일 : 2017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15.12.24)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가. 목적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1조).

- 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 다. 시장이 반기별로 금고로부터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추가함(안 제17조).
- 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자부 예규 제30호, '15.12.24)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정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원안 동의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 완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 동의
-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5. 18. ~ 2017. 6. 7.)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5. 검토 의견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 기준과 논의의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8조1)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2),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위임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금고 지정 절차 : 입찰공고(자치단체장) → 제안서 제출(금융기관) →

제안서 평가(금고지정심의위원회) → 금고지정(자치단체장)

- 관계법령에서 금고지정을 강행규정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인 공금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강조하고, 공금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금융기관)와의 협력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의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의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사·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사·군 및 자치구의 경우 사·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정(16.11.30)으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선 등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자치단체가 금고를 운영함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재정상태 등이 각각 상이한 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있어서 금고제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우리말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 불명확한 법령 내용은 법집행의 지연, 법적 다툼이나 법령해석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바, 안 제2조 등에서는 법령심사 과정에서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을 알기 쉽게 수정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체계의 편의성과 통일성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은 알기 쉽고 평이한 표현과 문장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법령을 찾아보기 쉽도록 체계가 갖추어질 것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규범이 친숙성이 있을 때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입법에 있어 법령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의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가능한 명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사용하고 법문장도 간결하고 국문 법에 맞게 작성하도록 노력이 요구됨.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항>**

조 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1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재정법 분법에 따른 변경
1조	지방 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	띄어쓰기
1조	금융기관중	금융기관 중	띄어쓰기
7조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1 및 별표 2	기호삭제
7조	다른 수의방법에 따라	따라 수의방법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7조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시와의 협력사업	알기쉬운 법령정비
9조	9명이상	9명 이상	띄어쓰기
9조	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기호삭제
9조	3급이상	3급 이상	띄어쓰기
12조	운영중 제출받기	운영 중 제출 받기	띄어쓰기
12조	변경시	변경 시	띄어쓰기
12조	운영중	운영 중	띄어쓰기
12조	금고은행이	금고가	금고 정의에 은행 포함
17조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알기쉬운 법령정비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안 제17조 제1항, 별표1 및 별표2)

- 안 제17조제1항은 시장에게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상황과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인 바, 최근 금융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신한은행 정보보안업무 태만사건('17.8월), 신용카드사 고객정보유출사건('14.1월), 금융회사 전산망 마비('13.3월)등 발생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시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 ----- -----	상황, 금고-----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표 1 및 별표 2)

- 안 [별표 1] 및 [별표 2]는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와 관련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배점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와의 협력사업(5→4점) 및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7→6점)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보완관리 전산처리 능력 배점을 상향(5→7점)조정하려는 것임(붙임자료 참조).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중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3점)와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6점)을 제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 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계		100	계		10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4)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18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가. 관내 지점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5)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5)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신 설 >	(5)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7)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6)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10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5)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시와의 협력사업 < 신 설 >	(5)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 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4)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참고자료 참조)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세부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하향 조정(5→4점)은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위한 것인바, 금고 선정을 위한 협력사업비(출연금)의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신규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추진 실적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한편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이 평소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도록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협력사업비 :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자치 단체에 제공되는 현금 및 물품을 의미함.

둘째, 수납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항목 배점 하향 조정(7→6점)은 기존 금고에 유리한 배점을 축소하여 금고 지정 시 공정성과 자율경쟁을 유도 한다는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임.

셋째,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평가 항목의 배점 비중 상향 조정(5→7점)은 금융전산보안시스템의 중요성 증대와 보안능력 요구를 강화하여 평가하려는 것인바, 전산해킹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금융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자치구 금고 지정은 각 자치구와 금고은행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하고 있는바, 금고지정 변경시 각 자치구의 세입금 수납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의 부담 등을 포함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시행 2016.1.1] [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2015.12.24, 폐지제정]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 02-2100-3514

1. 총 칙

[1] 목 적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제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19)
 - 마.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
- <별 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9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침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9)	6. 기타사항(9) - 항목 가. 000(5) 나. 000(4)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경영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첩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 - 국외평가기관(6)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7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관에게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관(금융원, 새마을금고경영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첩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0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인정성, 7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 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형, 농·수·신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관 공무원, 새마을금고 중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31점)</p> <p>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p>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자본비율(7)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인정성, 7점)로 평가 - 고정미하여신비율(7) - 자기자본이익율(6)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 (1) - 항목추가 <p>*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 기준은 해당 감독 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형, 농·수·신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관 공무원, 새마을금고 중회 등의 기준에 따름</p> <p>*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p>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p> <p>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p> <p>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p> <p>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p> <p>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p> <p>※ 추가배점 불가</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p> <p>※ 금과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p>	<p>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p> <p>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p> <p>※ 금과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p> <p>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 - 추가배점</p> <p>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 추가배점</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19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p> <p>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p> <p>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p> <p>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p> <p>*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p> <p>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p>
<p>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4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9점)</p> <p>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p> <p>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4점)</p> <p>*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p> <p>※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p>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1]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2]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부칙 <제30호, 2015.12.24>

-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 이 예규 시행과 동시 종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 2014. 12. 30)은 폐지함
-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